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문진석 · 김남희  
김용만 · 서왕진 · 강준현  
권칠승 · 김태선 · 박홍배  
황명선 · 박수현 · 오세희  
민홍철 · 한민수 · 김영배  
이주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,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.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,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,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.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, 범죄 조직의

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.

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,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,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).

##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8(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사 특례) ①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(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)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(이하 “신분비공개수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,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신분위장수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,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, 변경 또는 행사
2.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·거래
3. 위장 신분을 사용한 자금의 송금·이체, 교부 및 출금

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한다.

제2조의9(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특례의 절차)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.

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·목적·대상·범위·기간·장소·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조의8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이하 “허가서”라 한다)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.

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·목적·대상·범위·기간·장소·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
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8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.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조의10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) ①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제2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조의9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제2조의11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)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조의8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, 제2조의9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

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조의9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

제2조의12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) 사법경찰관리가 제2조의8 부터 제2조의11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·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2.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
3.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
4.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

제2조의13(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(이하 “국가수사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의14(비밀준수의 의무) ①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·집행·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15(면책)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조의16(수사 지원 및 교육)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하고, 전문지식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

여야 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2조의1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2조의8(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</u>  <u>사 특례) ① 사법경찰관리는</u>  <u>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신</u>  <u>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(정</u>  <u>보통신망을 포함한다) 또는 범</u>  <u>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</u>  <u>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</u>  <u>료 등을 수집(이하 “신분비공</u>  <u>개수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</u>  <u>용사기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</u>  <u>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</u>  <u>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, 다른</u>  <u>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</u>  <u>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</u>  <u>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</u>  <u>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</u>  <u>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</u>  <u>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신분위</u>  <u>장수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,</u>  <u>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,</u>  <u>변경 또는 행사</u></p>

<신 설>

2.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·거래

3. 위장 신분을 사용한 자금의 송금·이체, 교부 및 출금

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9(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특례의 절차)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.

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·목적·대상·범위·기간·장소·방법

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조의8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이하 “허가서”라 한다)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.

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·목적·대상·범위·기간·장소·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.

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8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

<신 설>

검사에게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.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조의10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) ①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제2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조의9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11(전기통신금융사기에  
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) ①  
사법경찰관리는 제2조의8제2항  
의 요건을 구비하고, 제2조의9  
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 
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 
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  
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.  
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 
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 
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  
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리는 48  
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  
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  
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  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 
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 
제2조의9제7항 및 제8항을 준  
용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12(전기통신금융사기에  
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 
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 
자료 등의 사용제한) 사법경찰  
관리가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  
1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 
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·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
2.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

3.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

4.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

제2조의13(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(이하 “국가수사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 
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  
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  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 
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  
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  
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의14(비밀준수의 의무) ①  
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까지에  
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 
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·집행  
·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 
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 
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 
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 
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  
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 
된다.

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 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
정한다.

제2조의15(면책) ① 사법경찰관리  
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 
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 
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

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16(수사 지원 및 교육)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지원을 하고, 전문지식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벌칙) <신 설>

(생 략)

제16조(벌칙) ① 제2조의14를 위  
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  
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 
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  
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 
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
에 처한다.

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 
음)